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1105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1.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7. 9. 접수 제521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신진우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부담이득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¹⁾)입니다.

나. 소외 C(이하 ‘C’ 이라 합니다)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인 D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자이고, 소외 B(이하 ‘B’ 라 합니다)는 C의 자형(姊兄)이자, 위 의료법인 감사로서 C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방조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갑 제2호증 공소장, 갑 제3호증 나의사건검색 조회 화면).

다. 피고는 B의 배우자이고, C의 누나로서, 2021. 4. 12. 경북 포항시 북구 E, F, G, H, I, J, K 및 L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8 부동산’ 이라 합니다)를 증여받은 자입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가. C과 B의 D요양병원 관련 범죄사실

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

C과 B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D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0. 1. 15. 공소 제기된 후, 2021.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호 사건으로 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 2021노115호 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갑 제2호증 공소장, 갑 제3호증 나의사건검색 조회 화면).

II.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4. 2. 7. 의료법인 M을 설립한 후 위 재단이 개설한 D요양병원(이하 ‘D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인사·회계·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해 왔다.

피고인 N은 피고인 C의 아내로서 D요양병원의 간호팀장으로 근무해 왔고, 피고인 O은 피고인 C과 남매 관계로서 D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 P, 피고인 Q는 피고인 C과 남매 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자형이다.

피고인 의료법인 M은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 아래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피고인의 가족인 B, Q, P, O에게 요양병원 설립 계획을 설명하여 자금을 출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B, Q, P, O으로부터 각각 1억 6,000만 원(합계 6억 4,000만 원)을 출연받아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토지

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의료법인 M의 재산으로 기부하고, 사실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피고인의 가족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 급여 명목으로 각 가족에게 월 500만 원씩 병원 수익을 배분할 생각이었음에도 2014. 1.경 지인인 S, T, U, V을 형식상의 이사로 내세워 경상북도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등을 제출하여 2014. 2. 7. 경상북도로부터 의료법인 M의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달 13. 포항시 북구 W에서 의료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갖춘 후 D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2019. 9.경까지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영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D요양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16,694,427,000원, 의료급여비 3,321,808,650원 등 합계 20,016,235,650원을 지급받았다.

(중략)

2.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5.경 C과 함께 중국에서 가족 여행을 하던 중 C에게서 요양병원 설립 계획을 듣고, C에게 병원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의료진을 모집하는 등 도움을 주고 C이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D요양병

원을 개설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D요양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함께 20,016,235,65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N은 D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간호사를 모집하고,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는 C에게 각각 1억 6,000만 원을 출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의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요양급여비용환수)

- 1)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C은 의료인의 자격 없이, M 명의를 이용하여 D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위반 및 원고가 피해자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하였고, B는 이러한 C의 의료법위반 및 특정(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습니다.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이 개설·운영한 D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2. 1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의료법을 위반하여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D요양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인 원고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6,694,427,000원을 지급받았고, B 등은 C이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출연하여 C의 의료법위반 및 특정(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습니다.

- 4)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2020. 1. 22. B에게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 및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 합계 17,148,783,180 원²⁾의 환수 결정 통보를 하였고(갑 제5호증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현재까지 B는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사해행위 당시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 2) 이 사건의 경우 B는 피고와 2021.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C과 B 등이 D요양병원

2) 공소 내용의 편취 금액과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 ▶ 공소 내용의 편취 금액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요청하여 회신한 2019. 9. 30.경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합계인 반면,
- ▶ 원고가 통보한 금액은 수사 이후에도 C 등이 D요양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2020. 1.경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합계이기 때문입니다.

을 개설한 2014. 2. 13.경부터 원고가 B에게 환수 결정 통보한 2020. 1. 22.경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 즉 원고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요양급여비용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날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원고의 채권이 원고가 B에게 환수 결정 통보를 한 날 발생하였다고 보아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3) 따라서 원고가 2020. 1. 22.경 B에게 환수 결정 통보한 금액은 전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와 피고 사이의 2021. 4. 12.자 증여계약

채무자 B는 수익자 피고와 2021.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7. 9.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2021. 4. 12. 증여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 및 사해행위성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1. 4. 12.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였습니다.

1) 적극재산

사해행위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주변 토지인 경북 포항시 북구 X 전 288평, Y 대 291㎡ 및 Z 전 1587㎡를 소유하고 있었고(갑 제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지가 기준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는 52,297,820원입니다.

< B의 2021. 4. 12.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

단위(원)

	적극재산	가액
1 부동산	경북 포항시 북구 E 대 641㎡ 1/5지분	2,846,040
2 부동산	경북 포항시 북구 F 전 836㎡ 1/5지분	3,494,480
3 부동산	경북 포항시 북구 G 대 212㎡ 1/5지분	877,680
4 부동산	경북 포항시 북구 H 하천 ³⁾ 803㎡ 1/5지분	2,007,500
5 부동산	경북 포항시 북구 I 대 367㎡ 1/5지분	623,280
6 부동산	경북 포항시 북구 J 답 1091㎡ 1/5지분	2,792,960
7 부동산	경북 포항시 북구 K 답 253평(836㎡) 1/5지분	2,140,160
8 부동산	경북 포항시 북구 L 답 179평(592㎡) 1/5지분	1,515,520
	경북 포항시 북구 X 전 288평	9,615,200
	경북 포항시 북구 Y 대 291㎡	6,547,500
	경북 포항시 북구 Z 전 1587㎡	19,837,500
	계	52,297,820

① 이 사건 1 부동산(경북 포항시 북구 E 대 641㎡ 1/5지분)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2,846,040원 = 641㎡ × 22,200원/㎡⁴⁾ × 1/5

② 이 사건 2 부동산(경북 포항시 북구 F 전 836㎡ 1/5지분)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3,494,480원 = 836㎡ × 20,900원/㎡ × 1/5

3) 토지가 하천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있으므로.

포항시 북구 H 토지와 바로 접해있고, 항공사진상 실제 이용상황이 전으로 동일한 Z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2,500원/㎡을 이용하였습니다(국세청 AA 질의회산 내용 참조).

4) 갑 제7호증 각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참조

③ 이 사건 3 부동산(경북 포항시 북구 G 대 212㎡ 1/5지분)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877,680원 = 212㎡ × 20,700원/㎡ × 1/5

④ 이 사건 4 부동산(경북 포항시 북구 H 하천 803㎡ 1/5지분)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2,007,500원 = 803㎡ × 12,500원/㎡ × 1/5

⑤ 이 사건 5 부동산(경북 포항시 북구 I 대 367㎡ 1/5지분)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623,280원 = 212㎡ × 14,700원/㎡ × 1/5

⑥ 이 사건 6 부동산(경북 포항시 북구 J 답 1091㎡ 1/5지분)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2,792,960원 = 1091㎡ × 12,800원/㎡ × 1/5

⑦ 이 사건 7 부동산(경북 포항시 북구 K 답 253평(836㎡) 1/5지분)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2,140,160원 = 836㎡ × 12,800원/㎡ × 1/5

⑧ 이 사건 8 부동산(경북 포항시 북구 L 답 179평(592㎡) 1/5지분)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1,515,520원 = 592㎡ × 12,800원/㎡ × 1/5

⑨ 경북 포항시 북구 X 전 288평(952㎡)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9,615,200원 = 952㎡ × 10,100원/㎡

⑩ 경북 포항시 북구 Y 대 291㎡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6,547,500원 = 291㎡ × 22,500원/㎡

⑪ 경북 포항시 북구 Z 전 1587㎡

▶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 19,837,500원 = 1587㎡ × 12,500원/㎡

2) 소극재산

반면, 사해행위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채무 및 AB조합에 대한 대출채무가 있었고, 소극재산 합계는 17,174,783,180원입니다.

- ①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채무 : 17,148,783,180원
- ② 경북 포항시 북구 Z 토지를 담보로 한 AB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채권최고액
합계 : 26,000,000원

3) 소결

따라서 B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그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 B의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 정리 > 단위(원)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사해	경북 포항시 북구 E	2,864,040	환수채무	17,148,783,180
사해	경북 포항시 북구 F	3,494,480		AB조합
사해	경북 포항시 북구 G	877,680	대출채무	
사해	경북 포항시 북구 H	2,007,500		

사해	경북 포항시 복구 I	623,280		
사해	경북 포항시 복구 J	2,792,960		
사해	경북 포항시 복구 K	2,140,160		
사해	경북 포항시 복구 L	1,515,520		
	경북 포항시 복구 X	9,615,200		
	경북 포항시 복구 Y	6,547,500		
	경북 포항시 복구 Z	19,837,500		
	사해행위 전	52,297,820	소극재산합 계	17,174,783,180
	적극재산 합계			
	사해행위 후	36,000,200		
	적극재산 합계			
사해행위 전·후 모두 채무초과상태임				

4.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가.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고 소극적인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도 원고 등 특정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 즉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섣뚱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926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① 증여계약일 2021. 4. 12.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② B에 대하여 2020. 1. 15.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B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 2021노115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갑 제2호증 공소장, 갑 제3호증 나의사건검색 조회 화면), 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점, ③ 피고는 B와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인 점 및 ④ 이 사건 의료법인 M은 이사, 감사 등이 친인척 관계인 사실상 가족법인 형태로 공동피고인들인 사무장 C 및 나머지 방조범 N(C의 배우자), O, P, Q 모두 피고의 남매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인 B에게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의사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악의 또한 매우 강하게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5.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구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2021. 4. 12.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52147호로 마친 2번B지분전부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부 동 산

1. [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E 대 641㎡
중 공유자 B 지분 5분의 1 전부
2. [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F 전 836㎡
중 공유자 B 지분 5분의 1 전부
3. [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G 대 212㎡
중 공유자 B 지분 5분의 1 전부
4. [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H 하천 803㎡
중 공유자 B 지분 5분의 1 전부
5. [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I 대 367㎡
중 공유자 B 지분 5분의 1 전부
6. [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J 답 1091㎡
중 공유자 B 지분 5분의 1 전부
7. [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K 답 253평
중 공유자 B 지분 5분의 1 전부
8. [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L 답 179평
중 공유자 B 지분 5분의 1 전부. 끝.

